



검찰
PROSECUTORS' OFFICE

토론회

검찰의 수사관행, 이대로 관참은가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 순 서 ————— ■

■ 사 회

- 박 인 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 널

- 김 상 검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염 건 웅 (명지대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채 명 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홍 세 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토 론

검찰개혁과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07

- 김 상 검 (동국대 법학과 교수)

자살로 이끄는 검찰의 수사관행, 수사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 13

- 염 건 웅 (명지대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사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방안에 대하여..... 19

- 채 명 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피조사자의 자살과 검찰의 수사관행 23

- 홍 세 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검찰개혁과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최근 또 다시 스폰서 검사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소위 ‘정운호 게이트’로 야기된 검찰 개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던 검찰의 자체개혁은 무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부장판사까지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민의 사법개혁의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아무튼 일단 검찰 고위직의 부패 의혹사건은 검찰의 자체개혁 의지에 수그러들던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검찰의 부패의혹사건으로 인하여 잠잠해지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또 다른 문제는 강압수사 내지 밀어붙이기식 수사 또는 압박수사이다. 이러한 강압수사 이외에도 저인망식 수사 내지 투망식 수사라 불리는 무차별적 수사도 문제이다. 더구나 검찰의 이러한 수사태도 또는 수사관행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과거 권위정부 시대에 보았던 특정 의도를 가진 수사 또는 나아가 정치적 수사가 아닌지 의혹을 보내고 있다.

검찰의 밀어붙이기식 수사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더구나 수사의 대상인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수사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검찰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이 강하게 비판을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부회장이 검찰의 수사 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비리사건이나 기업의 비리사건에서 수사혐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또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법치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법과 제

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도중에 자살한 피의자는 2004년 5명에서 2015년에는 22명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89명이 수사 도중에 자살하였다.¹⁾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을 상대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2012년 147건, 2013년 157건, 2014년 187건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검찰수사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신속한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가한다든지 비리 기업수사에서 너무 급하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신청권을 갖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형사사건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다. 검사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의 대표자이며,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소추대상의 공무원이 아님에도 검찰청법은 제37조에서 탄핵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 등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과거 검찰은 권력의 도구 내지 시녀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였고,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받거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가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부패하거나,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음으로써 법조비리의 한 축으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다수의 검사는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국가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하여 책무를 다하고 있지만, 일부 검사의 부패나 일탈행위로 검찰 전체가 국민의 비난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의 인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관행으로 인권침해의 오명을 받는다면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1) 한국경제 2016. 8. 27. A3면 참조.

II. 검찰개혁의 필요성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검찰의 부패사건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검찰의 강압수사나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의 빈번한 자살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을 비롯하여 2004년에는 전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 및 2015년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 등 기업인들과 2004년 뇌물수수혐의를 받던 안상영 전 부산시장,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관행도 검찰의 개혁 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검찰개혁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검찰과 관련된 법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게이트 사건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태도가 변하면서 정치적 중립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고, 강압적 수사관행으로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 현직 검사가 구속되면서 수사방법에 대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스폰서 검사사건이 불거지면서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검사윤리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검찰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었다. 검찰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검찰은 전국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조직체로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게 된다.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 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 원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통일적으로 처리하여 검사들이 막강한 기소독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2004년 검찰청법 제7조가 개정되면서 일부 폐지되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뀌었다. 또한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였고,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가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

2) 이 부분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검찰개혁 토론편 등에서 발췌한 것이다.

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하던 것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 하였다. 특히 2011년 개정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변호사나 법학교수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사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검찰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오랜 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고지와 변호사선임권,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등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제도 및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압수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Ⅲ. 검찰개혁으로서 수사관행의 개선문제

검찰개혁은 권위정부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국가권력의 독주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던 검찰권의 제자리 찾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오·남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일부 검사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나 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국가의 최고규범을 위시하여 관련 법령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훈령으로 제정된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 대형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었고, 검사의 부패사건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전면에서 등장하였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검찰청법을 개정하거나 형사사법체계의 관련 법률들의 개정과 자체 윤리의식의 강화 등 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의 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검찰총장의 임기제 확립, 검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소위 기획수사라고 의심을 받는 검찰의 기업비리수사가 수사의 성과와 관계없이 위법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통하여 검찰이 무리한 수사, 저인망식의 먼지털기식의 수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검찰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도 검찰개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검찰이 범죄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를 압박한다고 하여도, 이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사하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하여 사법치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은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검사들의 고압적이고 때로는 군림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에 임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검찰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강압수사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부 검사에 의한 이러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지속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하기 해야만 한다. 즉 강압수사 등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제화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³⁾

그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론 이를 두고 검찰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강압수사,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 등 용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검찰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선봉에 서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르기 보다는 주어진 권한의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헌법의 요구와 달리 검찰의 수사에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을 압박한다.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고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적 수사관행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3) 그런 관점에서 제19대 국회에서 강압수사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자살로 이끄는 검찰의 수사관행, 수사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

염 건 응

명지대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9월26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평소 곧은 성격과 치밀한 업무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한 자존심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압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롯데그룹 수사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표명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회장의 충격적인 자살 소식과 더불어 과연 이번만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자살이 있었나를 되짚어 보면, 적지 않은 수가 검찰 소환 전 또는 수사 중에 자살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6년간 79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 2010년 8명 △ 2011년 14명 △ 2012년 10명 △ 2013년 11명 △ 2014년 21명 △ 2015년 상반기 15명이다.

또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수사도중 자살한 재계인사

이름 / 직책	혐의	자살(시도)시점	비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횡령, 분식회계	2015년 4월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자살
김학헌 에이스저축은행 회장	부실대출	2012년 1월	검찰 소환 당일 자살
저축은행 관계자 3명	저축은행 비리	2011년	관련자 3명 자살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비자금 조성	2004년 3월	검찰 조사 도중 자살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2003년 8월	검찰 조사 세차례 받은뒤 자살

검찰 수사도중 자살한 경우는 재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정관계 인사들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함바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던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2011년), 정윤희 문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최모 경위(2014년), 호남철도 궤도공사 납품업체 선정 과정 수사와 관련해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2014) 등도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명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검찰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각자의 혐의 만큼이나 제각각이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대상자들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죽음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평범한 일반인 보다 사회적 성공을 이룬 고위공직자나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심리학적으로 보면 통상 소환 전에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환 후에는 자괴감과 모멸감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소위 첼피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유서에서도 공직자로 평생 청렴하게 살아 온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염려하며 고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5년에 5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 성완종 회장은 유서에서 내가 왜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이 수사를 받는 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검찰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사회적 저명인사들의 경우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우선 포토라인에 서야 한데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밀기도 한다.

소환대상자들이 검찰청에 들어가 조사를 받기 전보다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이고, 몇몇 인사들은 조사 전 긴장했던 모습과 달리 조사 후에는 검찰관계자와 가벼운 농담을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결국 개인의 심리상태가 극단적 선택인

자살의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검찰 조사 후 조사과정에서 느낀 모멸감 등을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성공을 이룬 저명인사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느낀 모멸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검찰 조사 전 자살을 하는 경우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 때문이라면 조사 후 자살을 하는 경우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검찰 주요 업무인 수사는 피의자들이 숨기려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본질적 속성 때문에 친절하게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검찰과 직접 대면한 대다수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이 검찰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방식이 수사대상자들을 자살로 내 모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기업비리 혹은 공직비리 수사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제한된 수사인력과 시간의 제한 등 제약조건 때문에 관련 사안 전부를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보통 큰줄기가 되는 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이 집중된다.

검찰의 고전적 수사기법 가운데 하나로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별건수사가 있다. 기업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우 핵심 관계자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 관련 증거나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비리혐의를 밝혀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사대상이 되는 개인은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별건수사가 진행되면 수사대상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사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명백한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여 모멸감을 주는 검찰수사관행은 손쉽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과거와 현재의 검찰 모습이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검찰 수사는 미래에도 모멸감을 줘서 자백하게 만드는 모습을 답습할 것이다.

물론 검찰도 수사도중 자살이 끊이지 않자 대책 마련에 고심을 했다. 조사 도중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차원에서 긴급체포를 해 자살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이는 인신구속을 하는 사안인 만큼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 2015년 대검찰청에서는 일선청에 피의자 수사 업무지침을 내려 보냈다. 피의자 조사 때 인권 침

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피의자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지침이었다. 그러나 롯데그룹 이부회장의 자살은 검찰의 노력을 무색해지게 만들었다.

검찰수사도중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관행을 큰 틀에서 바꿔야 한다.

검찰수사기법인 자백에 의존한 수사방식을 과학적 증거수집에 의한 수사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별건수사도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원은 자백을 주요증거로 인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법원도 자백을 주요증거로 인용하지 않도록 검찰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법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원리를 삼고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 소환 되는 인사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있을 뿐 확정된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소환 전부터 죄인 취급을 하고 또 수사 중에도 모멸감을 주는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꿔야 한다.

불안한 심리를 보이는 피의자는 심리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혐의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긴급체포를 통해 인신구속을 해봤자 심리적 불안상태는 계속된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수사구조에서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문제가 된 스폰서 부장검사의 예를 보듯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권력을 자신들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가 왔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논할 때 검찰의 반론은 항상 경찰의 방대한 조직과 낮은 수준의 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의 기능을 견제할 정도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감찰기능을 검찰 외부에 맡겨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피의자 수사 업무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권침해나 자살사건이 발생할 시 실제로 담당수사팀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검사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방안에 대하여

채 명 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1. 머리말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천명하고 있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나 수사능력을 넘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인권옹호의식과 사명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 문제만은 아니다.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견제장치는 미약하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당한 회유나 협박을 당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과 기소과정은 폐쇄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을 넘고, 지난 해에만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 역시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2. 검사평가제의 개요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검사평가제’는 이러한 전제하에 도입되었다. ‘검사평가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 검사와 공판검사를 검사평가표를 통해 평가하는 구조이며, 도입 당시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검사평가표는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의 6개 평가항목에 5단계의 점수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취합된 자료는 변협에 설치된 ‘검사평가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취합,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 송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여 ‘우수검사’ 명단은 공개하고, ‘하위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 제1회 검사평가 결과

2015년 말 최초 시행된 검사평가는 평가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였지만 1,000건 이상의 검사평가표가 제출되는 등 많은 변호사들이 열의를 보였다. 검사평가 결과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도 다수 있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증인신문을 적절히 하는 등 재판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다.

반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피의자를 모욕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고소인에게 ‘탈세’ 운운하여 고소 취하하라고 으박지르다가, “지청장에게 알리겠다”고 항의하자 사과함
- 참고인에게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의 계좌조회결과를 보여주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함
- 무리한 보여주기식 밤샘조사를 진행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피의자에 사생활에 대해 ‘알아봐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무리한 자백을 강요함
- 피의자가 부인 취지의 진술을 하자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칩. 당시 피의자가 심장 수술을 하여 큰 소리를 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소리를 칩
-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3개월 처리 시한이 임박하자 고소취하를 종용함
- 공개법정에서 증인신문시 증인에게 폭언을 하여 증인이 그렇게 무섭게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소연을 함
- 공판 도중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이거나 소리를 칩. 판결 선고 전 증인을 소환하여 위증으로 기소하겠다는 등 압력을 행사함
- 변호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조사 5시간 내내 피의자를 포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킴
- 수사검사로서 피의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백을 유도함.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자백하도록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여 위압적이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
- 항고인 측 변호인이 추가 제출 증거를 제시하며 검사에게 재수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사기 당한 놈이 미친놈 아니냐”, “내가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항고기각 처리함

이상의 검사평가 결과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되었고, 하위검사 본인에게도 평가 결과가 전달되었다.

4. 결론

대한변협이 시행 중인 ‘검사평가제’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의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제대로 정착될 경우 검사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검사평가제’는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검찰이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검찰 개혁을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검사평가제’와 같은 외부에서의 견제 노력과 더불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원칙에 기초한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피조사자의 자살과 검찰의 수사관행

홍 세 옥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치스

1. 검찰의 수사관행이 피조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얼마 전 검찰 소환을 앞둔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또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람의 수는 총 83명에 이른다.⁴⁾ 특히 2004년에는 5명, 2005년에는 3명, 2006년에는 4명, 2007년에는 1명으로 증가세 없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던 것과는 달리, 2008년에는 11명, 2009년에는 4명, 2010년에는 9명, 2011년에는 14명, 2012년에는 10명, 2013년에는 11명, 2014년 1월~7월까지의 11명이 검찰 수사를 전후로 자살을 선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기간 동안 자살한 피조사자 중 절반에 이르는 인원의 직업군이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 기업가, 정치인’등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자살의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겠으나 흔히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직업군에서 검찰의 수사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으로서의 인간이자 사회적인 인간이기도 한 피조사자라는 존재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피조사자도 있을 것이고,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거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검찰의 수사관행 및 시스템이 엘리트 집단에 국한한 피조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피조사자의 자살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이들과 담당 수사기관까지 충격에

4) 홍일표(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 자료.

빠트린다. 또한 검찰에서는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됨으로써 사건의 진실은 규명되지 않은 채 종결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피조사자의 자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일은 인명의 보호와 진실의 규명이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2.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피조사자에 대한 이해

검찰의 수사 과정 및 수사 직전·후에 발생하는 피조사자들의 자살은 반드시 엘리트 집단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엘리트 집단에서의 그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기까지, 일각에서는 이들이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⁵⁾라고도 명명하는데 여기에는 몇몇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 행위는 개인적 비리로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구조적이며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트 집단에 속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에서 물질적인 풍요까지 누리므로 업무수행 중에 자신을 둘러싼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의무 및 신뢰와 이익을 지키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 전제를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조직의 구조는 범죄와 부패에 점점 취약해 진다.

이때에 엘리트 집단은 사회지도층이기에 더 큰 사회적 관심과 함께 비난의 여론에 부딪치게 된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들의 범죄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조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와 여러 정황을 수집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사자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그 물망식 수사가 피조사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쌓아온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부의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른바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스스로를 쉽게 패배자로 낙인찍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엘리트 집단의 중년 남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엘리트 집단의 경우 검찰조사과정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더 큰 굴욕감을 느낄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많은 연구결과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과정에서

5) 1939년 미국사회학회 연설에서 서덜랜드가 처음으로 명명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집단의 굴욕감에 대하여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3. 범죄수사의 효율성과 피조사자 특성의 고려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검찰조사과정은 어느 정도는 피조사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반상식에 비추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장에서 이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엘리트 집단의 위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 피의자에 비하여 과도한 굴욕감을 주고 이를 통하여 원하는 수사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조사관행이라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일반인과 엘리트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집단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수사 대상이기 이전에 생명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생명권은 생명이란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고,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도 생명 및 건강 등 인도적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해줌으로써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⁶⁾, 아직 피조사자 신분에는 불과한 피의자 중 일정집단이라 하더라도 수사 도중 자살률이 급증하는 집단이 있다면, 국가기관인 검찰에서는 이러한 집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에 비추어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당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처분으로 종결하게 되어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더 이상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확립이라는 검찰수사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상대주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는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따라서 검찰의 수사관행이 엘리트 집단에 과도한 굴욕감을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수사기법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며, 검찰이 일반인과 엘리트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함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집단의 자살률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러한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수사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며,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검찰수사관행의 개선책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4. 피조사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책

피조사자는 인간이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특히 엘리트 집단의 피조사자의 수사 도중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관행에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그물망 식으로 피조사자의 주변 인물들을 무조건 수사하고 보는 방식이나 별건 수사, 자백에 의존한 수사 등에서 벗어나 과학수사와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지위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수사 실무 담당자의 깊은 이해 역시 수반되어야 하며 인권교육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 종사자가 현재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범죄보도로 이어져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게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피조사자의 피의 사실과 관련한 검찰의 짙막한 언급들에 대해 특종 경쟁을 벌이는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유죄를 추단하게 만들고 회복이 불가능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누구라도 자신의 범죄혐의가 연일 뉴스에 보도된다면 엄청난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⁷⁾

더 나아가 이를 적용하고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 설립의 필요성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되겠지만 검찰 스스로 이를 해결

7) 형법 제126조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제3의 기관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이 세워지고 검찰 스스로도 그동안의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에 있어 정의를 구현하는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현 및 정의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